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 16872호, 2020. 1. 29. 공포, 2020. 7. 30. 시행)됨에 따라,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,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·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

3) 행정규제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(이하 “양성평등조치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.

② 총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,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이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3(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(이하 “양성평등조치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별표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.</u> <u>② 총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,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<u>③ 교육부장관이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</u>

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
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
는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6
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교원임
용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
쳐야 한다.

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-6867